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1 | 2024.11.18. (2024.11.11~11.1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11~11.17)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PF(Project Financing)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PF 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리스크 감소 △부동산개발시장 경기 활력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개발 + 운영 + 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PF 사업 관리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 적극 육성 △데이터 산업 육성 △제조업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향후 5년간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서비스산업 기반(인프라) 정비·고도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하고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자금 지원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연료 등 현행 대기관리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신규 운송수단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제한 규정 신설로 범죄별 경중에 따른 종사제한 기간의 세부기준,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유사성(사업 규모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를 면제하는 등 규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경영판단의 원칙, 복수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등을 도입하고, 이사의 특별배임죄,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폐지하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

신성장 · 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 · 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0인)**」 ,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 ·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며,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서를 부정하게 작성 · 제출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4인)**」 ,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21인)」**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 ·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

국내 CRO 또한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 ·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53인)」** ,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 · 신고되거나 변경등록 · 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과방위>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18~11.19 개최될 예정이며, <예결위>는 11.18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재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국토교통부)
-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공정거래위원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위원회)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0인)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4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근의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0인)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21인)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5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53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11~11.17)

[바로가기](#)

- **[해외 규제]** 특집: 트럼프 재당선 및 공화당의 양원 장악: 美 규제환경의 변화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 **[형사]** 위조된 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중국]** 중국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 출자기한 개정 및 시사점
- **[건설/부동산]**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0 (2024년 11월 2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 역량 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2024-11-13
-------	--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음

* PF(Project Financing) :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KDI)과 50여 회의 전문가·시행·시공·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PF 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리스크 감소 △부동산개발시장 경기 활력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개발 + 운영 + 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PF 사업 관리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산업 구조 선진화

👉 시장 변동 리스크 최소화, 투자 활성화 도모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 ▪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 유도 ▪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 ▪ 책임준공,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 ▪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 마련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

-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 보수 점검(MRO) 시장 육성
-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향후 5년 간('25년~'29년) 66조원 규모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 등 서비스 수출 지원

2024-11-14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임

먼저,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예: 민간 투자사가 추천한 서비스기업에 신속절차 적용 등)하고,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함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25년)으로 전(全)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함.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을 지속함

우리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함.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함. 제조회사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함.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 X(산업) + as a Service)의 기획·개발을 전(全)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

수요가 증가하나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함. 숙박업의 경우,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함.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하여 향후 5년 간('25년~'29년) 2.5조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함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간('25년~'29년)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함.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24.11.26~27),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함

서비스산업 기반(인프라) 정비·고도화를 추진함.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보완(일부 업종 → 전체 서비스업)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산업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서비스 연구개발(R&D)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함

금융위원회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11-11

- 역동적 시장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
-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음

공정거래분야 성과로는

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공정위는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밝힘

②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제고

-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밝힘

③ 국민불편·기업부담 규제 개선 및 법집행시스템 개편

-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법집행시스템도 대폭 개편하였다고 밝힘

향후 정책 추진계획으로는

① 역동적 시장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

-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것이라고 밝힘
-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新)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임
- 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임

②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

-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임
-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신유행 거래(SNS, 구독경제,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2 시행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1-11 시행
-------	-----------------	---------------

저소득층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대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 및 구축물의 실제 노후화 수준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2 시행
-------	------------------	---------------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및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를 종전에는 합산하여 연간 10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연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2 시행
-------	---------------------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시기 및 절차,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 의뢰 기관 등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의 기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도’, ‘운용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도’,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 및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금액 규모의 적정성’을 내용으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는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기관에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②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의 기한 (제2조의2제4항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위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2 시행

종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 및 환급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 (제2조제2항)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에서 ‘5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고,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 (제81조제6항, 제81조제11항제5호 신설)

-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기 위해 새로 가입한 저축을 해지한 경우 등을 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에 추가함

③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제105조의2 신설)

-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환급을 대행하는 자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대행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대행을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도록 함
-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1-14 시행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소연료 충전시설에서 충전가능한 대상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선박 등 이동수단으로 확대하며,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폭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소연료 충전시설과 도로, 보호시설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사용한 후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 저장 시 안전유지기준을 강화하며,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의 운전자가 2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운행기준을 개선하고, 수소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의 복합재료용기의 최고충전압력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2 시행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경우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시설용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융복합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2 시행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경우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시설용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융복합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2 시행

집합투자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 유가족의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제도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을 정하고, 순보유잔고의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 확대 (제6조제6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형식상 1인 투자자이지만 실질상 여러 명의 수익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 투자자성이 있어 해당 1인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자금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을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함

②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허용 (제85조제5호의4 신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한 거래로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등과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③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수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 도입 (제109조제3항제10호 신설)

- 신탁업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이며,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도록 함

④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 (제208조의3제2항)

-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만분의 1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여 공매도와 관련된 공시정보를 확대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1.11. ~12.23.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하고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6개 물품 중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tel:044-215-4416)

해양수산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12. ~12.23.
-------	--	------------------------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자금 지원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호 신설)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044-200-5839, 팩스: 044-200-5849\)](tel:044-200-5839)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1.13. ~12.23.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연료 등 현행 대기관리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관련 준수사항 명확화 (안 제54조)

-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관리 제도 정비 (안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제120조의4)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등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제도 정비 (안 별표 3,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안 제4조, 제5조)

- 사업자가 부속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대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여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 기한 연장
- 사업자가 가스열펌프(GHP)에 대해 저감시설 인증 지연 등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저감시설 설치계획(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기관은 적정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수리
- 2022년 12월 31일 당시 기설치·설치 중인 GHP는 타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 적용 예외

④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도 정비 (안 별표 10의3, 별표 16의2)

-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대한 부상지붕시설 보완조치 등 관리기준이 신설(‘19.7)됨에 따라 조치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점검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 보완

⑤ 기타 (안 제7조의2,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 2024. 7. 23. 개정된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시행규칙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 법률용어와 정합성을 위해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정비 등

※ 문의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http://www.mae.go.kr) (전화: 044-201-6879, 팩스: 044-201-6873)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1.13.
~12.23.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를 제한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되었음

해당 법률에서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운송수단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또한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제한 규정 신설로 범죄별 경중에 따른 종사제한 기간의 세부기준,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http://www.mae.go.kr) (전화: 044-201-4157, 팩스: 044-201-560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3.
~12.23.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유사성(사업 규모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동일하게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기본교육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본교육에 관한 비용이 부담금에 편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핵연료물질사용자 규제체계 개선 (안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1조)

- 안전관리규정 외 안전보고서도 제출토록 규정 개정
-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사업 중단 시 허가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안전관리자 선임 등 규정 신설

② 행정처분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 금지 규정 신설 (안 제57조의2)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원양산업발전법 등을 참조하여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 행정처분기간 중 사업폐지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③ 종사자의 기본교육 등 주체를 원안위로 변경 개정 (안 제106조)

- 교육 주체를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그 외 교육은 원자력관계사업자로 구분하여 개정하고 관련 교육 비용이 부담금에 편입·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

※ 문의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024.11.14.
~2025.1.1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724호, 2023.9.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 규정 (안 제56조의2)
- ②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문구 수정 (안 제108조의2)
- ③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 마련 (안 108조의3)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http://www.mot.go.kr) (전화: 044-201-3850, 팩스: 044-201-558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11-15 발의
---------	-------------------------	---------------

최근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주주이익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개선만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우선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이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인 것으로 보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사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자 함**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를 통하여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마련 및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하고자 함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기업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024-11-11 발의
-------	---	---------------

최근 국민의 고령화·재산축적 증가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신탁은 재산관리수단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업무경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판매·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24-11-13 발의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2024-11-1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28제1항제9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8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2024-11-12 발의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4-11-13 발의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4-11-13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024-11-13 발의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는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인판매기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메꾸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의원 등 10인)

2024-11-14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은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데,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4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0인)

2024-11-15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6인)

2024-11-11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AI 규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실감하게 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적절한 규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진흥과 규제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과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의 권익 향상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인공지능 시스템 및 고영향 인공지능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③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④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⑤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됨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23조부터 제25조)
- ⑥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사용자 및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함 (안 제26조부터 제29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2024-11-11 발의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제조, 금융, 물류, 의료, 교육, 통신, 미디어 등 전 산업 영역에 걸쳐 혁신과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세계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고, 인공지능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인공지능 인덱스에서 세계 6위,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정부 인공지능 준비 지수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 투자액(1,419억 달러)의 약 62%를 MS,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이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이며,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기술 수준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공지능기술의 특성상 미국 빅테크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4인)

2024-11-12 발의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

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며,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서를 부정하게 작성·제출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불법드론·폭발물 등)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2024-11-13 발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AI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여 배포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확산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 (안 제73조제2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2024-11-14 발의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배준영
의원 등 11인)**

2024-11-12 발의

현행법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안 64조제2항 및 제3항)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2024-11-13 발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0인)

2024-11-13 발의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11-14 발의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벤처투자 시장 장기침체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하는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제2호)
- ② 초기 기업 발굴·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자에 추가함 (안 제11조제1항)
- ③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함 (안 제14조의2 신설)
- ④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9조의2 신설)
- ⑤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함 (안 제28조)
- ⑥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제도 신설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함 (안 제30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등 21인)**

2024-11-11 발의

반도체는 21세기 4차산업혁명·디지털·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산업 주도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세계 반도체산업 질서는 설계와 지적재산권, 소재·부품·장비,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가별 ‘분업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최근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선진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확대 등에 총력태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간에선 대규모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에 제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 수출도 20%대를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도 장악해왔지만, 시장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세 배 이상 되는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세계 반도체 패권경쟁 및 동맹의 재편과 기술 경쟁 등이 겹쳐 K-반도체 전망은 불투명하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6조)
-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 ④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 (안 제15조)
- 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⑥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 ⑦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3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28조)

- ⑧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도입함 (안 제31조)
- 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33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024-11-12 발의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지정의 결과 투자액 다수가 전략산업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반면 해외 선진국 다수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자국의 일자리 확충과 균형발전에 근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2024-11-12 발의

지난해 10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력망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크게 후퇴하고 정전이 늘어 경제와 개인 복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이에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음.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 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에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그럼에도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망 개발사업은 투자자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기존공된 송전망의 경우 10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고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을 연계한 전력망 협업으로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하고 촘촘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2024-11-13 발의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에게 말함)가 설비의 신설·증설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신고한 물량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외에는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시황과 평균요금 수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수입 여부와 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천연가스를 구입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직수입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가소비용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또는 별도 수입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조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 9 및 제40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등 15인)

2024-11-13 발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023년 현재 1,017,390MW로 2014년 대비 10년간 191% 순증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151MW로 전체 발전설비 144,415MW의 1.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특성과 풍력발전산업 연관 제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가 고착화되면서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또한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풍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4-11-13 발의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15건을 차지해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세계 주요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국가경제 및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국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 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2024-11-14 발의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도 대기업이 본사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식자재 마트도 대형화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소규모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고 있어 다른 유통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11-11 발의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생약 및 이를 활용한 제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같은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제조업체에서는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일반 화학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국내 생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으로, 한약재 위해물질 이슈 발생 시 생약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근본적 원인 해결이 어려우며, 제조업체에서는 화학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수준 부담에 따라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90조의4 신설)
- ② 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 (안 제90조의5 신설)
- ③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에게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안 제92조의2제2호)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024-11-13 발의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이러한 플랫폼상의 우선노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해당 도매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여 재주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등)

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2024-11-14 발의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시장은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452억 8,300만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약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는 717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CRO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4억원 수준이나, 해외 CRO의 평균 매출액은 379억원에 달해 약 3배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CRO의 신뢰도와 인력 부족임

이에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4호·제5호,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2024-11-11 발의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53인)

2024-11-12 발의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다른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석면 등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입자상물질인 먼지는 배출 당시 고체·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먼지와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먼지를 측정·관리함에 있어 여과성 먼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응축성 먼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4-11-12 발의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등록된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9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4-11-14 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기업·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4-11-14 발의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 (안 제2조 및 제23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2024-11-14 발의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확대 중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의2 신설)**
 -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기관·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②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 (안 제18조의3 신설)**
 -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 실시
- ③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26조)**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 포함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11-1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 구글지도와 애플지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다른 모바일앱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6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2024-11-12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11-13 발의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 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4-11-15 발의

23년도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7000여 건 중 1000여건 이상이 견본주택과 영업인이 나눠준 광고물 등이 실제 주택이 크게 다른 일명 ‘사기분양’에 관한 것일 정도로 ‘사기분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수성인 ‘선분양 후입주’ 제도에 의해 한국 국민들은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 유일하게 시행사와 직접 만나는 곳이 바로 견본주택이고, 견본주택과 광고물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견본주택에서부터 사기 분양 피해가 시작됨

‘사기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등 피해자들에게는 입주지연, 장시간의 소송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극심한 피해로 연결됨

이렇게 중요한 견본주택과 광고물에 대해서 정작 실제 사업계획승인된 설계도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분쟁 발생시 행정조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임. 현행법엔 견본주택과 실주택이 다르더라도 실 주택이 승인된 설계도서에 맞춰 시공되었다면, 이를 재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부득이하게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체가 이를 고지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분양 후입주제 하 사기분양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 (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60조제1항 등 개정)**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11/19(화) 10:00	예산안 상정,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예결산소위	11/20(수) 10:00	예산안 심사
정무위	예결산소위	11/18(월) 10:00	예산안 심사
	예결산소위	11/19(화) 15:00	예산안 의결
기재위	전체회의	11/18(월) 14:00	예산안 의결 및 법안 상정
	조세소위	11/18(월) 10:00	법안 심사
		11/19(화) 10:00	
		11/21(목) 10:00	
		11/22(금) 09:30	
	경제재정소위	11/20(수) 10:00	법안 심사
과방위	전체회의	11/18(월) 10:00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회
		11/19(화) 10:00	
		11/20(수) 10:00	법안 및 청원 상정, 예산안 상정
문체위	예결산소위	11/18(월) 10:00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11/19(화) 14:00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문화예술법안소위	11/20(수) 14:00	법안 심사
	체육관광법안소위	11/21(목) 14:00	법안 심사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1/20(수) 10:00	법안 상정
	산업통상자원소위	11/21(목) 10:00	법안 심사
	중소벤처기업소위	11/22(금) 10:00	법안 심사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11/19(화) 10:00	법안 심사
	법안심사2소위	11/20(수) 10:00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1(목) 10:00	법안 의결
환노위	전체회의	11/20(수) 10:00	예산안 등 의결, 법안 등 상정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1/19(화) 10:00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11/20(수) 10:00	법안 심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11/18(월) 10:00	예산안 등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8(월) 10:00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 세정책 국회포럼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8(화) 13:30	미래를 향해하다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혁신	한준호·염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8(월) 14:00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 대 방안 모색	김동아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9(화) 10:30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 세미나 : K-ESS산 업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이언주·김병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1/19(화) 14:00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1] 국내 콘텐츠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	한민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19(화) 15:00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소 수출·수입 정책의 문제점	윤종오 의원실 등	Zoom 웨비나
	11/20(수) 13:30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	강준현·최형두 의원실 등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1/20(수) 07:30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산업 발 전 추진 전략	이철규·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1/20(수) 14:00	K헬스케어·웰다잉 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	김성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1(목) 10:00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 COP29를 중심으로	김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1/22(금) 13:30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김원이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2(금) 14:00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 복합주유소 전환 필 요성과 과제	김원이·오세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1/18(월)	「THE 현안」제34호(2024-34호) 발간	국회도서관	
	11/20(수)	「금주의 서평」제704호(2024-45호) 발간		
	11/21(목)	기후 위기 시대의 개헌 및 입법 관련 세미나 개최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8(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14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13(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4.10호)	국회사무처	
	11/11(월)	「THE 현안」제33호(2024-33호)	국회도서관	
	11/13(수)	「금주의 서평」제703호(2024-44호)		
	11/13(수)	「Data&Law」2024-12호		
	11/12(화)	2024년 「예산춘추」네 번째 호	국회예산정책처	
	11/11(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13호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11~11.1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11(월)	해외 규제	특집: 트럼프 재당선 및 공화당의 양원 장악: 美 규제환경의 변화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11/11(월)	형사	위조된 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11/13(수)	중국	중국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 출자기한 개정 및 시사점
11/14(목)	건설/부동산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11/15(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0 (2024년 11월 2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